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1. 9. 18.  
총무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9월 1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1년 9월 11일
  - 다. 상정일자 : 제82회 임시회 제1차위원회 (2001. 9. 18)
-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김 영 남

#### 가. 제안이유

신공덕제2주택 재개발구역내에 공덕제1동 관할구역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등 관할구역 조정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동청사의 이전 및 지적분할로 인한 아현제3동, 신공덕동, 도화제2동, 노고산동, 연남동 및 상암동의 6개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공덕제1동 관할구역 452번지외 3필지 2,267㎡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
- 동청사의 이전 및 지적분할로 인한 6개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함.
  - 아현3동청사 소재지를 아현동615-1에서 아현동626-36으로

**변경**

- 신공덕동청사 소재지를 신공덕동26-4에서 신공덕동158으로 변경

- 도화2동청사 소재지를 도화동413-6에서 도화동353-2으로 변경

- 노고산동청사 소재지를 노고산동1-50에서 노고산동1-83으로 변경

- 연남동청사 소재지를 연남동223-91에서 연남동250-9으로 변경

- 상암동청사 소재지를 상암동140-3,8에서 상암동17-2외1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내에 포함된 공덕제1동 관할구역인 452번지외 3필지 2,267㎡(약 686평)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 조정하고, 동청사가 이전된 아현제3동, 신공덕동, 연남동, 상암동과 동청사의 지번이 변경된 도화2동 및 지적분할된 노고산동을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입주가 완료되어 연적만 조정하는 것이며 해당 동에서 조사한 경계변경대상지역실태조사에 의하면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아파트 단지내에 포함된 공덕제1동 관할구역인 452번지외 3필지 2,267㎡(약 686평)는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는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1. .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신공덕제2주택 재개발구역내에 공덕제1동 관할구역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는 동 관할구역 조정으로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동청사의 이전 및 지적분할로 인한 아현제3동, 신공덕동, 도화제2동, 노고산동, 연남동 및 상암동의 6개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2. 주요 개정골자

가. 신공덕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의 공덕제1동 관할구역 452번지외 3필지 2,267㎡를 신공덕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함.

나. 동청사의 이전 및 지적분할로 인한 6개 동청사의 소재지를 변경함.

- (1) 아현3동청사 소재지를 아현동615-1에서 아현동626-36으로 변경
- (2) 신공덕동청사 소재지를 신공덕동26-4에서 신공덕동158으로 변경
- (3) 도화2동청사 소재지를 도화동413-6에서 도화동353-2으로 변경
- (4) 노고산동청사 소재지를 노고산동1-50에서 노고산동1-83으로 변경
- (5) 연남동청사 소재지를 연남동223-91에서 연남동250-9으로 변경
- (6) 상암동청사 소재지를 상암동140-3,8에서 상암동17-2외1으로 변경

3. 개정 근거 : 지방자치법(2000.1.12 법률 제6115호)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1항

4. 조 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따로붙임

가. 입법예고('01. 8. 7~ 8. 26)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레·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1.9.7)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련, 별표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아현제3동, 도화제2동, 노고산동, 연남동 및 상암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중 공덕제1동 및 신공덕동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부 지역 관 할
마포구	아현제3동	아현동 626-36		
	공덕제1동	공덕동 29-6		공덕동중 105의 3을 기점으로 동105의 51을 경유 동118의1에 이르는 도로 이동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신공덕동	신공덕동 158	신공덕동	공덕동중 441-3을 기점으로 동 429-12를 경유하여 동429-15, 동427-13에 이르는 지역의 이남 지역 및 동452~454-1 지역과 도화동중 1-140 지역의 이북지역
	도화제2동	도화동 353-2		
	노고산동	노고산동 1-83		
	연 남 동	연남동 250-9		
	상 암 동	상암동 17-2외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아현제3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5월 16일부터, 신공덕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3월 16일부터, 도화제2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0년 3월 11일부터, 노고산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9년 2월 1일부터, 연남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1999년 12월 15일부터, 상암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2001년 4월 14일부터 각각 적용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 정 동 관 할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 관할				전지역 관 할	일부지역 관할
(생 략)				(현행과 같음)					
마포구	아현 제3동	아현동 615-1		아현동중 아현제 1,2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마포구	아현 제3동	아현동 626-36		----- ----- -----
	공덕 제1동	공덕동 29-6		공덕동중 105의 3을 기점으로 동105의 51을 경유 동118의1에 이르는 도로 이북 지역		공덕 제1동	공덕동 29-6		공덕동중 105의 3을 기점으로 동105의 51을 경유 동118의1에 이르는 도로 이북 지역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지역
	(생 략)					(현행과 같음)			
	신공 덕동	신공덕동 26-4	신공 덕동	공덕동중 441-3호를 기점으로 동429-12호를 경유하여 동429-15, 동427-13에 이르는 지역의 이남지역 과 도화동 중 1-140호 지역 의 이북지역	신공 덕동	신공덕동 158	신공 덕동	공덕동중 441-3을 기점으로 동429-12를 경유하여 동429-15, 동427-13에 이르는 지역의 이남지역 및 동 452~454-1 지역과 도화동 중 1-140 지역 의 이북지역	
(생 략)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사무소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합		구 분	동 사 무 소 명 칭	동사무소 소 재 지	법 정 동 관 합		
			전지역 관 합	일부지역 관합				전지역 관 합	일부지역 관합	
마포구	도화 제2동	도화동 413-6		도화동중 도화제1동장 및 신공덕동장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역	마포구	도화 제2동	도화동 353-2		----- ----- -----	
	(생략)					(현행과 같음)				
	노고산동	노고산동 1-50		노고산동중 신촌로 타리를 기점으로 노고산동 56의 90호를 연결하는 도로 이서지역을 제외한 전역과 대흥동중 대흥동 16의 63호를 기점으로 16의 92호를 경유 3의 29호를 연결하는 10m도로를 경계로 한 이북지역 및 신수동중 용산선(철도)를 경계로 한 동북지역		노고산동	노고산동	노고산동 1-83		----- ----- ----- ----- ----- ----- ----- ----- ----- ----- ----- -----
	(생략)						(현행과 같음)			
	연남동	연남동 223-91	연남동				연남동	연남동 250-9	----	
(생략)				(현행과 같음)						
삼암동	삼암동 140-3.8	삼암동		삼암동	삼암동 17-2외1	-----				